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166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19일

발 의 자: 이은림, 김 경, 김규남,
김지향, 박유진, 박춘선,
심미경, 옥재은, 이경숙,
이병도, 최재란, 최호정,
허 훈 의원(13명)

1. 주문

-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-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○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○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
- 출석 일시 : 2024.2.20.(화) ~ 2.23.(금), 2.29(목), 3.8.(금) <6일>
- 출석 대상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